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356

제출연월일 : 2005. 1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이유

○충청북도학생수영장이 2004. 9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용료 징수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영장을 관리 하고자 하며,

○1995. 3. 1일자로 폐교된 충주시 종민동 510-3에 위치한 성남초등학교 종인분교장 부지에 교직원의 연찬활동,문화활동,여가활동 등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『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』을 신축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 및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지역교육청 소속 교직원복지회관을 추가함.(안 제2조)
- 나.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를 운영 현실에 맞게 간소화 하고 학생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수영장 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를 신설함.(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4호)
- 다. 각종대회 및 행사 등 수영장 시설·설비의 전용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다이빙장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스킨스쿠버와 다이빙장 일반사용 자로 구분 징수함.(안 제26조)
- 라. 사용료 반환 기준을 수영장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함.(안 제28조제3호)
- 마. 복지회관사용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튀직 교직원을 포함한다)과 그 가족을 원칙으로 하고,단체 (기관) 및 일반인은 관장이 허가한 자로 함. (안 제37조)

- 바. 복지회관 시설사용 신청은 별지 제 4호 내지 제 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, 5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함.(안 제38조)
- 사.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액을 별표 4와 같이 정함.(안 제39조)
- 아.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함.(안 제39조의1)
- 자.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,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,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, 이에 근거한 관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사 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함.(안 제40조)
- 차.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물품의 훼손 ·분실시 사용자 가 변상 하여야 함.(안 제41조)
- 카.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함(안 제2 최

- □ 개정조례안 : 붙임
- □ 참고사항
 - O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 - O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
 - O 기 타 : 입법예고(2005. 05. 13 ~ 06. 02) 결과, 특이사항 없음.

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"를 "충청북도교육청 공 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"로 한다

- 제2조중 "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"를 "지역교육청 소속 교직원복지회 관(이하 "복지회관"이라 한다),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"로 한다.
- 제21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트장(이하 "체육시설"이라 한다)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회원증 또는 사용권을 교부 받아 사용 한다.
 - 4.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
- 제26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- 제2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. 월회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한때

제7장을, 제8장으로 하고, 제37조 내지 제40조를 제43조 내지 제46조로 하며, 제7장(제37조 내지 42조)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복지회관

- 제37조(사용대상) 복지회관 사용대상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(퇴직 교직원을 포함한다)과 그 가족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, 단체(기관) 및 일반인은 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복지회관장 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- 제38조(시설의 사용) ①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·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39조(사용료) ①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4와 같다.

- 제39조의1(사용료의 감면)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 - 1.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
 - 2.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40조(사용제한)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 거나 그 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.
 - 1.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
 - 2.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
 - 3.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및 이에 근거한 관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 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
- 제41조(사용자의 책임)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회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·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- 제42조(재정)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.

제27조제2항중 "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"을 "「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"으로, "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"을 "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"으로, "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"을 "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"을 "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」으로, "장애인복지법"을 "「장애인복지법」으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 □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(제26조 관련)

기관명	사 용 구 분			징 수 액	비고			
		공 연	장	50,000원				
		강	당	75,000원	○ 전시실 사용기간			
		전시실 (내	부)	20,000원	4월 ~ 10월(09:00 ~ 20:00)			
		전시실 (외	부)	10,000원	- 11월 ~ 3월(09:00 ~ 18:00) -○ 기준시간 초과사용할때는 매 시간당			
		可	아 노	10,000원				
		프로젝터		30,000원	기준 사용료의 20% 가산 (단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)			
	비소서미	난 방		실사용량				
	부속설비	냉	방	전가용기본요금 1/30+실시용량	○ 토요일 오후, 공휴일, 야간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% 가산			
		조명(전기)		전가수용가본요금> 1/30+실사용량	○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			
			초등학생이하	1,500원	○ 사용료는 1인 기준임			
	수영장 (경영풀장	일일입장	중 •고등학생	2,000원 2,000의	○ 사동료는 1년 기준 H ○ 초등학생이하 : 13세 미만			
		월회원	일반인 초등학생이하	3,000원 30,000원	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
			중 •고등학생	35,000원	○ 중·고등학생 : 13세 이상 19세 미마 또는 참세즈의 소기점 기			
			일반인	50,000원	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			
 支刃耳亡		단체입장	초등학생이하	1,000원	○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			
충청북도 학생회관			중 •고등학생	1,500원	회원증을 소지한 자			
약 6위인 			일반인	2,500원	○ 강습료는 월 회비에 10,000원을 추가			
		일일입장	스킨스쿠버	10,000원	(스킨스쿠버 제외)			
			초등학생이하	2,500원	○ 단체는 15인 이상 적용			
			중・고등학생	3,000원	○ 다이빙장은 지도강사 입회시 사용 가능			
			일반인	4,000원	○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			
			스킨스쿠버	170,000원	1개당 7,000원 추가			
	수영장	월회원	초등학생이하	50,000원	' ' ' '			
	(다이빙장	2-1-0	중 •고등학생	55,000원				
			일반인	70,000원				
			스킨스쿠버	7,000원				
		rL-il ol zl	초등학생이하	2,000원				
		단체입장	중・고등학생	2,500원				
			일반인	3,500원				
	수영장	경영풀	장(시간당)	200,000원	○ 일·공휴일 및 야간사용(동계 17:00 이후, 하계 18:00이후)시 시간당 30% 가산			
	(전용)	다이병]장(시간당)	100,000원	○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			
	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	개인/	나물함(월)	3,000원	○ 월회비 3월이상 선납자는 해당기간 면제			

기관명	사	사 용 구 분		징 수 액	비고
		첫 개	개인	500원	
	롤 러	학생	단체	400원	○ 사용료는 1인 기준임
	스케이트장	일반 -	개인	1,000원] ○ 학생 :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
 제 천		일반 [단체	800원	
학생회관		취계	개인	500원	○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
	수영장	학생	단체	400원	
		(۱۷)	개인	1,000원	
		일반 -	단체	800원	
	Halm	1	A3-B4	40원	1매당
	복사료	1	A4-B5	30원	n,
77 E		ਨਿਮੀ	A3-B4	80원	n,
공 통	인쇄료	흑백	A4-B5	50원	n,
	(다)탕료실	.a)1	A3-B4	360원	n,
		칼라	A4-B5	180원	"

[별표 4]

□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(제39조 관련)

O 객실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교직원 및 교직원가족	공공단체 및 기타	비고
11평형	10,000	20,000	○ 1일은 당일 15:00부터 익일 12:00를 기준으로 함
22평 형	20,000	30,000	

O 시설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교직원 및 교직원가족	공공단체 및 기타	비 고
시설사용료	무료	50,000	 ○ 1일 기준(단체) ○ 100명 초과 시 초과하는 50명당 30,000원씩 가산 ○ 냉・난방비 별도실비 적용 *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세미나실, 분임토의실 등

인	③: 직 및	F	AX							
인		F	IΛV							
	직 명		AA)	(®:		HP:)
		8		성	명		주민	등록번호	이용	· 차량번호
	신청인고 관 7			성	명			주 소 또	는 근두	무처
동										
퀭										
8										
인										
사용희망기]간	Į,	<u>년</u> 월	<u> </u>	일	시그	부터	년 월	일	시까지
		11	평형(4	ol 9	2-1		22 ਯ	형형	*	메 모 란
사용희망실	실수	11	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	17.0	5)	10)인용	25인용		
10-10-1	- !			실			실	실		

년 월 일

신청인 직 성명 (인)

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장 귀하

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(기관·단체용)

1. 기관(단체) 명 칭:

주 소:

대표자 성명: 舒: HP:

2. 사용목적 :

3. 사용인원 : 대표자 외 명 (명단 별첨)

4. 사용희망기간 : 년 월 일 시부터

년 월 일 시까지(박 일)

5. 사용희망실수

		11평형	22 5	계	
객	실	(4인용)	10인용	25인용	Al
		실	실	실	실
일반시설		ㅁ다목적강당	및 회의실 ()	ㅁ세미나실 ()	※ 희망란에
		ㅁ분임토의실	()	ㅁ체력단련실()
		년 월 일	시부터 년	월 일 시까지	(박 일)

복지회관 사용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위와 같이 복지 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기관 (단체)장 (인)

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장 귀하

【별지 제6호 서식】

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허가서

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함

- 1. 기관·단체명(개인의 경우는 소속기관명):
- 2. 사용인원 : 대표자 외 명
- 3. 사용희망시설 및 기간

	11 더 처	22 5				
 객 실	11평형	10인용		25인용	Al	
' =	실	실		실	실	
	ㅁ다목적강대	당 및 회의실 ()		ㅁ세미나실	※ 희망란에	
일반시설	ㅁ분임토의^	실 ()		ㅁ체력단련소	일()	"○"표 기재
	년 월 '	일 시 부터	년	월 일	시까지(박 일)

4. 허가조건 : 사용료를 납부하고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장 (인)

귀하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장 총 칙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'몽공기관 '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(이하 '교육연구원 '이라 한다), 충청북도단 재교육연수원 (이하 '교육연수원 ''이라 한다),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및 지역교육청소속 도서관(이하 '도서관'이라한다), 충청북도학생회관 및 지역교육청소속 학생회관(이하 '학생회관'이라 한다),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및 지역교육청소속 학생후양장(이하 '수련원 및 야영장"이라 한다), 충청북도실업계	제1장 총 칙 제2조(정의)
고등학교공동실습소(이하" 공동실습쏘	지회관"이라 한다), 충청북도실업계고등
라 한다)등을 말한다.	<u>학교공동실습소</u>
제5장 학생회관	제5장 학생회관
	제5장 학생회관 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
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학생회관의 시설	
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학생회관의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	
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학생회관의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	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
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학생회관의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	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 다만, 수영장 및 롤러스
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학생회관의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	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
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학생회관의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	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
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학생회관의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	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
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학생회관의 시설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신설>	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
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학생회관의 시설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신설>	제21조(학생회관의 사용) ①

현 행	개 정 안
 도서실 사용자 및 입·퇴관 방법 및 절차 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도서 (신 설) 	1 2 3 4.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
제28조(사용료의 반환)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 당한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 1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 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. 인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 용이 정지될 때 3. 〈신 설〉	제28조(사용료의 반환)
< 신 설 >	제7장 복지회관 제37조(사용대상) 복지회관 사용대상은 충 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 (퇴직 교직원을 포함한다)라 그 가족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, 단체(기관) 및 일반인은 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복지회관장이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. 제38조(시설의 사용) ①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내지

현 행	개 정 안
	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·통지하여야 한다.
< 신 설 >	제39조(사용료) ①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액 은 별표 4와 같다.
< 신 설 >	제39조의1(사용료의 감면)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1.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.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< 신 설 >	제40조(사용제한)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1.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2.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3.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복지 회관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및 이에 근 거한 관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 신 설 >	제41조(사용자의 책임)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회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
< 신 설 >	손·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. 제42조(재정)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.
<u>제7장</u> 공동실습소	제8장 공동실습소
제37조(사용대상) 공동실습소는 실업계고 등학교 교원 및 학생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소장은 근로청소년, 단체(기관) 및 일반인으로부터 공동실습소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원 및 학생의 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	<u>제43조(</u> 현행 제37조와 같음)
제38조(사용제한) 실습소 이용자가 실습 중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에는 소장은 실습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. 1. 다른 사람의 실습에 지장을 초래 할 때 2. 실습소 안전수칙을 위한 할 때 3. 기타 실습에 부적합하다고 소장이 판단 될 때	<u>제44조(</u> 현행 제38조와 같음)
<u>제39조(</u> 사용자의 책임) 사용자가 실습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습소의 시설물이나	<u>제45조(</u> 현행 제39조와 같음)

현 행	개	정	안
변 행 물품을 훼손·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한다. 제40조(사용료) 일반인이 실습소를 사용 할경우 실습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			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(개정 2005.3.24 법률 제7410호)

130條 (使用料의 徵收條例등) ①使用料·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.

②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·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倍 이내의 過怠料에, 公共施設을 부정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.

③第2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